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대상범죄 가중처벌〉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가.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 개관	3
나.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2. 13.
3. 회 부 일: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각칙 본조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형을 가중하고, 상습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에는 그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로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0조의2(아동에 대한 죄의 처벌가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u>

약취, 강간, 강제추행, 살인, 학대, 폭행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형사정책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아동 대상 흉포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때마다 입법 및 사법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¹⁾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1) 김현수,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점, 법과 정책 제14집제2호(2008. 8.), p.120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가 인정됨.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 개관

현행 「형법」상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고,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독립 구성요건을 규정한 범죄로는 아동학사죄(제274조),²⁾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제287조),³⁾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⁵⁾ 준사기죄(제348조)⁶⁾ 등이 있음.

특별형법으로서 아동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들로는 「아동복지법」,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

2) 제274조(아동학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3)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6)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7)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 등이 있음.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은 형법각칙에서 미성년자 등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총칙에서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칙 상 모든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③ (생략)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생략)
- ② ~ ④ (생략)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각칙 본조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형법」 총칙에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점에서 형사법 체계 전반에 미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형법」의 총칙은 각종 형벌법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¹⁰⁾ 피해자 아동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독립한 범죄에 대해 다시 아동이 피해자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추가적인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없이 가중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¹¹⁾

그리고, 「형법」은 학계에서 그 보호범익에 따라 국가적 범익에 대한 죄(제2편제1장부터 제4장까지), 사회적 범익에 대한 죄(제2편제5장부터 제23장까지) 및 개인적 범익에 대한 죄(제2편제24장부터 제42장까지)로

10) 신동운, 형법총론 제12판, p.3

11)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폭처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도 단순히 법정형만의 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조항들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범행방법, 신분 등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결정례)

구분하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각각 생명·신체에 대한 죄(제2편제24장부터 제28장까지), 자유에 대한 죄(제2편제29장부터 제32장까지), 명예·신용에 대한 죄(제2편제33장 및 제3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2편제35장 및 제36장) 및 재산에 대한 죄(제2편제37장부터 제42장까지)로 각각 구분됨. 「형법」 각칙 개별범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이 범죄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정하여야 하는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따라서,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하기보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개별 범죄에 따라 그 보호법익, 범죄태양의 위험성, 결과불법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칙 본조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의 관계에서, 동일 가중구성요건에 대해 어느 법률로 가중처벌할 것인지와 관련 법적용상 혼란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

둘째,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수단으로서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강화가 실효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형주의는 전통적으로 형벌의 위하(威嚇)를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12)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제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편,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결정례)

목적으로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범죄 억지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함.¹³⁾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율 자체가 아주 낮은 우리나라에서 중형주의 입법을 정당화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¹⁴⁾¹⁵⁾

또한, 이미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⁶⁾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별형사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더하여 「형법」의 모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형법」 각칙 상 범죄의 전체 피해자 및 20세 이하 피해자 수가 각각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형사정책적 실효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3) 김현수, 앞의 글, p.127

14) 정재환, 중형주의 형사정책 비판을 위한 시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7권제3호,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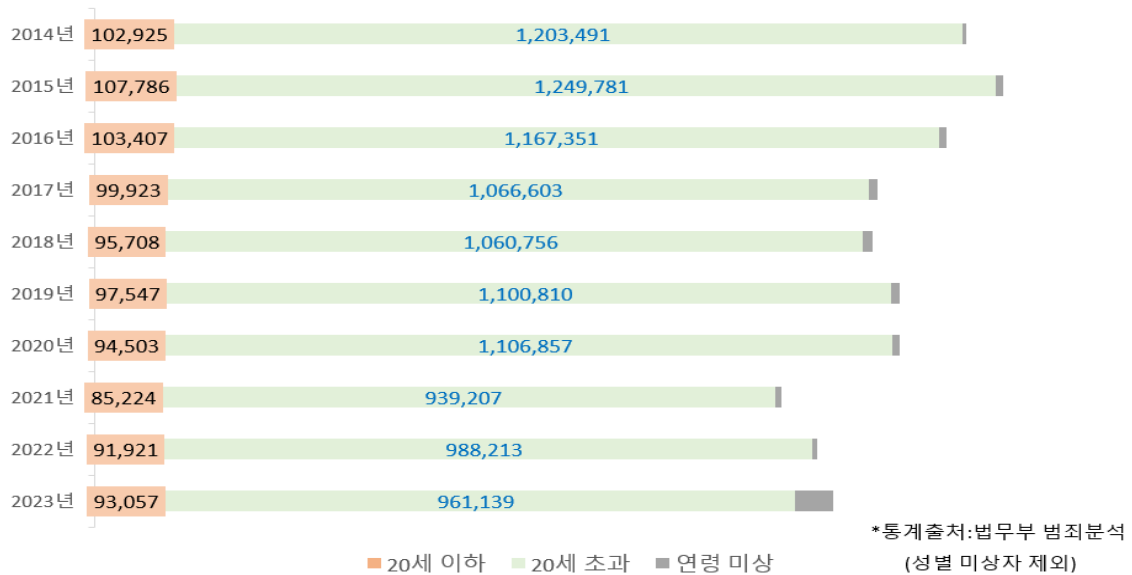
15)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36 결정례)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4년 이후 10년간 형법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셋째,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범죄대상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17)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과 동일하게 18세 미만 아동을 가중처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은 각각 ‘19세 미만’ 및 ‘13세 미

17)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만'을 가중처벌 기준으로 규정한 점에서, '18세 미만' 기준 가중처벌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특별형사법률도 해당 특별형사범죄의 대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법」 각칙 개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18세 미만'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입법할 정책적 필요성과 연령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정리하면, 개정안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총칙 개정의 형사법체계적 정합성, 아동 대상 범죄의 현황, 국민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형사정책적 측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056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